



지난해 **238만 가구**가 **1조 6천억원**을 받았습니다

일하는 즐거움 쌓이는 행복,

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5월에 신청하세요!

신청대상 근로자와 자영업자 (신청요건은 뒷면 확인!)

신청기간 2017. 5. 1. ~ 5. 31. (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후, 9월 말 지급 예정)

신청방법 ARS(1544-9944), **홈택스**(인터넷, 모바일), **서면신청**
※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참조



☎ 국번없이 126번 [2번 누른 뒤 4번]

검색창

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▼



신청자격

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
① 가구요건

(근로장려금) 18세 미만('98.1.2. 이후 출생)의 부양자녀가 있거나, 배우자가 있거나,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40세 이상('76.12.31.이전 출생)일 것

(자녀장려금)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

※ 부양자녀중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나,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것

② 부부합산 총소득요건(최대지급액)

기준금액	단독가구	홀벌이가구	맞벌이가구
근로장려금 요건 (최대지급액)	1,300만원 미만 (77만원)	2,100만원 미만 (185만원)	2,500만원 미만 (230만원)
자녀장려금 요건 (최대지급액)	4,000만원 미만 (부양자녀 수 × 50만원)		

③ 재산요건 ('16. 6.1. 기준)

(근로장려금) 가구원 모두의 부동산·예금 등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

(자녀장려금)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

※ 상세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→ 로그인(공인인증서) → '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신청' 에서 확인

장려금 지급

①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 모든 요건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됩니다.

- ▶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50% 지급됩니다.
- ▶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30%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됩니다.
- ▶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액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.

② 기한 후 신청('17년 6월1일 ~ 11월30일)의 경우 신청 월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의 10%를 차감하여 지급됩니다.

※ 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은 인터넷 홈택스로 조회

※ 장려금 계산은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가능 (공인인증서 필요)

유의할 사항

- ① 사업자등록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료 별도 부과 등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- ②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확정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③ 장려금 신청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청요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- ④ 자녀장려금의 경우 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.
- ⑤ 신청시 휴대전화번호와 본인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!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요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